

# 대법원 2024도841 라디오에의한 명예훼손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피고인이 2020. 4. 3.과 2020. 7. 24.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A재단<sup>1)</sup>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한 주체를 피해자로 특정하여 피해자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피고인을 저지하거나 표적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여 직접 또는 검찰을 동원하여 A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하였다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 4. 3.경 발언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2020. 7. 24.경 발언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도841 판결)

## 1. 사안의 개요

### 가. 당사자들의 지위

- ▣ 피고인 ⇒ 2018. 10.경부터 A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 2019. 1. 4.경부터 2021. 5. 31.까지 A재단의 유튜브 콘텐츠 방송 진행
- ▣ 피해자 ⇒ 이 사건 당시 검사로 재직

### 나. 사건의 경위

1) 이하 비실명 처리는 비실명 판결문과 일치하지 않음

- 피고인은 2019. 9. 24.경부터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던 중, **2019. 12. 24.**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검찰이 피고인 개인 계좌와 A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여 검찰에서 피고인 및 A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함
- 피고인은 **2020. 4. 5.**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2019년경부터 피고인 비리를 찾기 위하여 계좌를 다 들여다봤다고 추측하고, 이를 피해자를 포함한 검찰 사단이 한 일이라고 본다'는 취지로 발언함
- 피고인은 **2020. 7. 24.**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피고인이 과거 검찰 총장의 언행과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하기 위하여 A재단 계좌도 뒤지는 등 불법사찰을 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발언함
- 피고인은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 및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입장을 유지하다가, 2021. 1. 22. A재단 홈페이지에 '자신이 제기한 계좌추적의혹을 입증할 수 없었고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사과문을 게재함

#### 다.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20. 4. 3.과 2020. 7. 24.**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A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한 주체를 피해자로 특정하여 피해자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피고인을 저지하거나 표적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여 직접 또는 검찰을 동원하여 A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함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라디오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 라. 적용 법조 ➡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07조(명예훼손)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소송경과

### ▣ 제1심 ➡ 벌금 500만 원

- 2020. 4. 3. 발언 부분 이유 무죄
- 2020. 7. 24. 발언 부분 유죄

### ▣ 원심 ➡ 쌍방 항소 기각

- 2020. 4. 3. 발언 부분 무죄 이유
  - 피고인의 발언은 A재단 사무총장의 잘못된 보고를 근거로 검찰이 피고인을 불법 사찰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한 행동으로 보이고, 2020. 3. 31. 방송에서 검언유착 의혹 내용이 보도되어 피고인의 의혹이 강화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2020. 7. 24. 발언 부분 유죄 이유
  - 피고인의 발언은 검언유착 의혹과는 별개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부수적인 언급이라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의 발언은 의견 표명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하여 A재단 계좌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불법사찰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검찰이 의도적으로 A재단 계좌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려고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어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내용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됨

-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리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비방의 목적도 인정됨

### 3. 대법원의 판단

#### 가. 쟁점

- ▣ 2020. 4. 3. 발언 부분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 ▣ 2020. 7. 24. 발언 부분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 나. 판결 결과

- ▣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원심 수긍)

#### 다. 판단 내용

- ▣ 검사의 상고이유 관련(원심의 이유무죄 판단 부분)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 피고인의 상고이유 관련(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음